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5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권성동

조은희 · 김기웅 · 이달희

이상휘 • 권영진 • 서일준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수협, 산림조합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 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대하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저율과세 등) ①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12월 31일-----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월 31일----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30년 1월 1일
,